● 제30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1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경영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2468

Ⅰ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

나. 제 안 일 : 2021. 5. 28.

다. 회 부 일 : 2021. 6. 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
○ 부칙으로 규정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협의회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돌봄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이 2021년 1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

○ 개정안은 부칙으로 규정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본문에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는 안 제17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제17조 (생 략)	제18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

□ 협의회 존속기한의 만료

○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[1]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,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음.

○ 위 조례에 따라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부칙[2]으로 정하고 있음.

- 제284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중 협의회 존속기한 2년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, 추후 연장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음.

○ 이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조례 시행일 2019년 1월 3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1월 2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현재 협의회는 실효된 상태임.

-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, 집행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

---

1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부칙<제6963호, 2019.1.3.> 제2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하여 존속기한 만료일이 지나 두 차례의 임시회(제299회, 제300회)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.

□ 협의회 존속기한의 신설

○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돌봄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'21년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확충과 돌봄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의회의 운영체계 내실화가 추진되는 단계로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어 의회차원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함.

○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협의회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는 동 개정안은 그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□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·운영

○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,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.

市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요

□ 위원장 : 행정1부시장(당연직)

□ 위　원 : 15명 내외　　※ 실무협의체 별도 구성・운영('18.11.~)

- 여성가족정책실장, 평생교육국장,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, 교육정책국장
- 시의회의원, 자치구・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, 관련 전문가 등

□ 임　기 : 2년(연임 1회 가능)

□ 운　영 : 年 2회 정례회의 개최(필요시 수시개최 가능)

□ 주요 심의내용

-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돌봄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출처 : 2020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활성화 계획(서울시)

○ 2020년까지 총 5회의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,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 추진,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·확충, 코로나19 긴급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지원 활성화와 연계·협력에 기여하고 있음.

1. '18년 제1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18. 12. 18.)	
의제	-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추진 방향 공유 -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 보고 -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 및 자치구와 협력 우수사례 공유
2. '19년 제2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'19. 2. 20.)	
의제	-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대상 보고 및 키움센터 확충 협조 논의 - 자치구 우리키움참여단 구성 관련 협조 - '19년도 1학기 초등돌봄교실 추진 현황 논의

3. ’19년 제3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’19. 12. 12.)	
의제	-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-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사업보고(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) - 2020년도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(교육청)
4. ’20년 제4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’20. 6. 26.)	
의제	-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협조 - 융합형키움센터 마을돌봄조정관 운영 협조 -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립초교 스쿨버스 연계 협조 - (교육청) 초등돌봄교실 추진현황,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
5. ’20년 제5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(’20. 12. 22.)	
의제	- 2020년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주요 추진현황 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및 운영안내 - 일반·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- 코로나19 온마을 긴급돌봄체계 구축 협력 - (교육청) 2021년 서울시 초등돌봄교실 추진계획

출처 :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세부 실적(서울시)

3 종합 의견

○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신설하는 안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, 아이돌봄 사업의 확충과 운영내실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협의회 존속기한의 만료로 발생된 공백상태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.

문 의 처
장일진 입법조사관 (02-2180-8148)